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
설치비용 장수 및 자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27 일

여 수 시 장

2024/12/27



여수시 조례 제2173호

붙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장수 및 자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73호

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”을 “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칙</p> <p>제10조(기금의 조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칙</p> <p>제10조(기금의 조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<u>2029년 12월 31일까지</u>로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